2020년도 제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0. 4. 23.(목요일),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최승수, 박정인, 최현용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5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분과위원
3. 안건상정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81건(안건번호 제2020-13581호~1412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3581호~13582호는 블로그 이용자가 신청한 계정에 한하여 음원 파일을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불법복제물 전송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13583호~13586호는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OST 음원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664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20개, 총 3,869개의 URL 정보에 관해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0-18969호~22837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20개, 총 3,869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김경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62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5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저작물명, 출판사명, 7쪽의 저작물명, 출판사명, 8쪽의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댓글 내용, 10쪽의 저작물명, 댓글 내용, OSP명, 회사명, 11쪽의 게시자명, 12쪽의 사이트명, 이용자명, 게시물 내용, 채팅방명, 저작물명, 13쪽의 게시물 내용, 14쪽의 채팅방명, 저작물명, 15쪽의 사이트명, 채팅방명, 16쪽의 사이트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참고로 지난번 회의에서 심의 효율성을 위해 앞으로 전차 회의록 확인 시 비식별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취소선을 긋는 방안이 제안되었음. 이를 반영하여 비식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취소선 표시를 해놓았음.

또한 제2호 안건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므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24쪽~30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의 취소선 부분은 민원 신고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제2 호 안건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록은 해당 규정에 따라 비 공개해야 함.
- A 위원: 게시물이 특정될 수 없도록 제1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 중 해당 내용은 비식별 처리해야 함. 그리고 제2호 안건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록은 해당 쪽수만 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임.
- D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같은 생각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출판사명, 게시물 내용, 댓글 내용, OSP명, 회사명, 게시자명, 이용자명, 채팅방명, 사이트명은 비식별 처리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24 쪽~30쪽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D, B, C, A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13581호~14128 호로 게시물 수는 모두 681개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 서 보고로 갈음하겠음.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과 같은 직접증거 없이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으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할 수 있 음. 다만 직접증거 없이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 전송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신청한 음원 파일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인 안건번호 제2020-13581호~13582호에 대한시정권고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먼저 안건번호 제2020-13581 호는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 '※※※※(※※※※※※※)'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서로이웃한 계정에 한하여 음원을 전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임.

해당 블로그는 서로이웃 신청 시 신청인이 원하는 음악 앨범을 기재하면 서로이웃 신청 완료 후 블로그의 다운로드 카테고리에서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음. 서로이웃 신청은 매월 첫째 주에만 가능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다음으로 안건번호 제2020-13582 호는 티스토리 이용자 '♡♡♡♡♡♡♡♡♡♡♡)'가 티스토리를 운영하면서 방명록을 작성한 계정에 한하여 음원을 전송한 사안임.

해당 티스토리는 신청인이 방명록에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OST에 한하여 원하는 음악 앨범을 비밀댓글로 작성하면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카테고리의 비밀번호가 답글로 달린다고 공지하고 있음. 방명록 작성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만 가능함.

민원인은 해당 블로그를 2020. 3. 22. 보호원에 신고하여 보호원 담당자가 해당 티스토리 방명록에 비밀댓글을 작성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답글로 달리지 않아 음원 제공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한편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가 불법복제물은 아니므로 게시물이 저 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제가 됨.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정보'라는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시정권고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과 같이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불법복제물 전송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심의대상게시물은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929-13581호~1358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13581호~13582호는 불법복제물 전송사실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부결함이 타당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불법복제물 전송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결 의견임. 다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임.
- D 위원: 같은 의견임. 안건번호 제2020-13581호~13582호는 시정권고 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부결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13581호~1358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

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584호는 블로그 이용자 '♪(♪(♪(♪(♪)))*(♪(♪))*() 블로그를 운영하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 (♪(⟩())*() (♪(⟩()))*() (♪(⟩())*() (♪(⟩()))*() (♪(⟩())*() (⟩())*() (⟩())*() (⟩(⟩())*()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586호

는 블로그 이용자 'D●(D●●)'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D●D●(D●)'의 OST 'D● D●(D●) D●(D●)'의 C●(D●)'의 음원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가사, 앨범 표지와 함께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음원을 재생하여 주시기 바람. 심의대상 게시물은 2020. 1. 6. 일본 (D●)(D●)에서 발매되었으며, 작곡, 작가 모두 (D●) (D●)(D●)이며, 가수는 (D●)(D●)임. 현재 '아마존 재팬', '멜론' 등에서 음원으로 판매되고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13583호~1358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안건번호 제2020-13583호~13586호는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OST 음원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어려움.
- C 위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가결 의견임.
- D 위원: 같은 생각임. 안건번호 제2020-13583호~13586호는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보여 시정권고를 함이 타당함. 이에 가결함.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13583호~1358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587호~14128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음악 '마음을 드려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617호는 2020. 2. 16.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앨범 '사랑의 불시착 OST'에 수록된 곡임. '2020년 04월 14월 최신가요탑 100' 압축 파일 다운로드 가능하며, 약 30곡 이상 이용 가능함.

(음악 '찐이야'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630호는 2020. 3. 13.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앨범 '내일은 미스터트롯 결승전 베스트'에 수록되어 있음. '3D음악 내일은 미스터트롯 113곡 320k' 압축 파일 다운로드 가능하며, 약 38곡 이상 이용 가능함.

(음악 '덤더럼(Dumhdurum)'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3659호는 2020. 4. 13. 발매된 앨범 'LOOK'의 타이틀곡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161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April.15.tbz' 압축 파일다운로드 가능하며, 약 100곡 이상 이용 가능함.

(음악 'Puerto Rico'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677 호는 2020. 4. 10.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실연자인 '도넛맨(Donutman)'이 작곡, 작사, 편곡하였음.

(영화 '신비아파트 극장판 하늘도깨비 대 요르문간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942호는 2019. 12. 1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38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1. 13.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영화진흥위원회 통계자료에 따 르면 2019년 한국 애니메이션 박스오피스 1위 작품으로 관객 약 89 만명을 동원함.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 건번호 제2020-14006호는 2020. 2. 1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212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4. 7.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0. 4. 21. 기준으로 상영 중임.

(영화 '마이 스파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902 호는 2020. 4. 29. 국내 정식 개봉 예정인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3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한글 번역 자막이 mkv 영상 파일에 포함되어 있음.

- D 위원: 국내 개봉 전인 영화가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전송되고 있음. 어떻게 유통되는 것인지?
- A 위원: 국내 정식 개봉하지 않은 외화의 경우 해외에서 이미 개봉 된 영화가 불법 전송되거나 DVD 제작 과정에서 파일이 유출되어 온라인으로 유통됨.
- 성원영 전문위원: 한글 자막의 경우 자막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영상 파일에 삽입했을 가능성이 있음.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4100호는 2020. 3. 12. tvN에서 방영 시작한 드라마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전송한 사안임. 2020. 4. 21. 기준으로 6화까지 방영

되었으며, 총 12부작임. 가장 최근에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6화' 를 9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으로 안건번호 제2020-13587호 ~1412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안건번호 제2020-13587호~14128호는 모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저작권법 제133 조의3에 따라 시정권고를 가결함.
- D 위원: 데드카피형 불법복제물들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보여 시정권고를 함이 타당함.
- B 위원: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제2020-13587호~1412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 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13581호~1358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

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 2020-13583호~1412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5쪽부터 24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8969호~22837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선언

o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6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6.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최승수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